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53
----------	------

제출년월일 : 2014. 10. 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과 부합 되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추가(안 제3조)
- 나. 법 제32조(매매방법)에 따른 매매방법 중 정가·수의매매 조항 삽입(안 제54조)
- 다. 법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따른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명문화(안 제74조)
- 라. 법 제77조(평가의 실시) 중앙평가에 따른 평가의 실시 항목삭제(안 제85조)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붙임)

- 입법예고 : 2014. 8. 12 ~ 2014. 9. 1.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소란에 “충장길 312(이동)” 를 “충장로 312(이동)”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유지작물류” 를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 로 하고, “농민” 을 “농업인” 으로, “물품” 을 “품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패류” 를 “조개류·갑각류” 로 하고, “어민” 을 “어업인” 으로, “물품” 을 “품목”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법 제77조제2항” 을 “법 제77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법 제23조제3” 을 “법 제23조제3항” 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 중 “종료되거나” 를 “끝나거나” 로, “종료된” 을 “끝난”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매매방법” 을 “매매방법 등” 으로,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 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 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품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로 인정받은 농수산물
9.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6조에 중복 기재된 “제1항” 을 “제2항” 으로 하고,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하며, 제3항(중전 제2항)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중전 제2항 제2호) 중 “월간 거래금액비율” 을 “월간 거래금액” 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시장사용료는 부류별 거래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제8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 봉 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운영담당 장 정 순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경 원 (행정 3727)





【별지 제23호서식】

허가번호	<b>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b>		사진 3cm × 4c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중도매업 허가번호		상 호	
도매시장명		전화번호	(주택)
			(점포)
거래장소			
거래품목			
허가기간			
<p>「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안 산 시 장</b></p>			





#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명칭 등)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명 칭</th> <th rowspan="2">장 소</th> <th colspan="2">면 적 (㎡)</th> </tr> <tr> <th>대 지</th> <th>건 물</th> </tr> </thead> <tbody> <tr> <td>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td> <td>안산시 상록구 충장길 312(아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42,499.47</td> <td style="text-align: center;">27,447.2</td> </tr> </tbody> </table>	명 칭	장 소	면 적 (㎡)		대 지	건 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산시 상록구 충장길 312(아동)	42,499.47	27,447.2	<p>제2조(명칭 등)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명 칭</th> <th rowspan="2">장 소</th> <th colspan="2">면 적 (㎡)</th> </tr> <tr> <th>대 지</th> <th>건 물</th> </tr> </thead> <tbody> <tr> <td>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td> <td>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아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42,499.47</td> <td style="text-align: center;">27,447.2</td> </tr> </tbody> </table>	명 칭	장 소	면 적 (㎡)		대 지	건 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아동)	42,499.47	27,447.2
명 칭			장 소	면 적 (㎡)																	
	대 지	건 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산시 상록구 충장길 312(아동)	42,499.47	27,447.2																		
명 칭	장 소	면 적 (㎡)																			
		대 지	건 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아동)	42,499.47	27,447.2																		
<p>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u>유지작물류</u>·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또는 <u>농민</u>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u>물품</u></li> <li>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젓갈류·활어류 중 신선한 것 또는 <u>어민</u>이 생산한 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u>물품</u></li> </ol>	<p>제3조(거래품목)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과부류 : ----- -----<u>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u>----- -----<u>농업인</u>----- ----- <u>품목</u> -----</li> <li>2. 수산부류 : ----- -----<u>조개류·갑각류</u>----- -----또는 <u>어업인</u>----- ----- <u>품목</u> -----</li> </ol>																				
<p>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li> <li>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 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u></li> <li>2. <u>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무조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u></li> <li>3. (생략)</li> <li>③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시장은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u>법 제23조 제3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li> </ol>	<p>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② ----- ----- -----</li> <li>1. <u>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u></li> <li>2. <u>법 제77조제1항</u>----- ----- -----</li> <li>3. (현행과 같음)</li> <li>③ ----- ----- <u>법 제23조 제3항</u> ----- -----</li> </ol>																				

현행	개정안
<p>④ (생략)</p> <p>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의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li> <li>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li> <li>4. (생략)</li> </ol> <p>② ~ ③ (생략)</p> <p>제54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 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경우에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②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끝(-----끝난-----) -----)나거나----- -----</li> <li>3.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li> <li>4. (현행과 같음)</li> </ol>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4조(매매방법 등)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p> <p>③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p>

현행	개정안
<p>중개대상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21호 서식의 표준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p>	<p>중개대상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21호 서식의 표준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p>
<p>제56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li> <li>2.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li> <li>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li> <li>4.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 품목을 도매시장법인이 도매 거래하는 경우</li> <li>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li> <li>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않은 물품</li> </ul> </li> <li>6. 제86조에 따라 안산시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하에 경매 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li> <li>7.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법 제 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li> </ol>	<p>제56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8. 농수산물식품부장관이 거래방법·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 실적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p> <p>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p> <p>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p> <p>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농산물</p> <p>다. 동일한 출하자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등급규격을 갖춘 농산물을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 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경우</p> <p>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p> <p>마. 법 제35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수산물</p> <p>② 제1항제6호에 따라 반출된 경우에는 그 가격은 출하자, 경매사, 중도매인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p> <p>③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p> <p>제59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59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1. 대량 입하품</p> <p>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 출하주의 출하품</p> <p>3. 예약 출하품</p> <p>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p> <p>5.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 인증품</p> <p>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p> <p>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p> <p>8.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 인증품</p> <p>9.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p> <p>10. 파렛트 적재 출하품</p>	<p>1. 대량 입하품</p> <p>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 출하주의 출하품</p> <p>3. 예약 출하품</p> <p>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 규격품</p> <p>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p> <p>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품질 인증품</p> <p>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수산물</p> <p>&lt;삭 제&gt;</p> <p>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로 인정받은 농수산물</p> <p>9. 파렛트 적재 출하품</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4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에 따른 유해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4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6조(시장사용료) ① (생략)</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p>	<p>제76조(시장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상장에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시장사용료는 부류별 거래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부류별 시장사용료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월간 거래금액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한다.</p> <p>3.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 -----월간 거래금액-----</p> <p>3. (현행과 같음)</p>
<p>제85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 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사용료의 차등화·재지정 및 재허가시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85조 &lt;삭제&gt;</p>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553
----------	------

제안년월일 : 2014. 10. 30.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용어사용을 명확히 하고, 중도매인에 대한 우리 시 자체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관련 조항을 그대로 둠으로써 건전한 도매시장 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안 제3조에서 “품목”을 “것”으로 수정하여 용어사용을 명확히 하고, 안 제85조에서 중도매인에 대한 우리 시 자체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평가관련 일부 조항을 현행 조례대로 둠으로써 건전한 도매시장 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 (안 제3조, 안 제85조)

#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중 “품목”을 “것”으로 한다.

안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 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사용료의 차등화·재지정 및 재허가시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